약학연구소규정

1994. 9. 1 제정 2008. 12. 26 개정

- 제 1조(명칭) 이 연구소는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부설 약학연구소(이하 '연구소'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 2조(소재지) 연구소는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내에 둔다.
- 제 3조(목적) 약품자원을 조사, 연구하여 의약품을 창제 개발하는 연구를 통해 약학발 전 및 산학협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4조(연구)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를 한다.
 - 1. 의약품의 합성과 신약개발에 관한 연구
 - 2. 천연의약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
 - 3. 생리활성 및 약효시험에 관한 연구
 - 4. 약제기술의 발전에 관한 연구
 - 5. 안전성 시험 및 관련연구
 - 6.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관한 연구
- 제 5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- 1. 약학기술 및 자원개발 연구사업
 - 2. 연구 및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뢰자가 부담하는 의뢰에 의한 연구사업. 연구 및 조사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연구 및 조사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원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이를 위촉 수행케 한다.
 - 3. 연구출판물의 간행
 - 4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- 제 6조(구성) 연구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 - 1. 소장 : 1명
 - 2. 부소장 : 1명
 - 3. 감사 : 1명
 - 4. 행정기획실장 : 1명
 - 5. 연구원(전임연구원, 연구교수 및 외래연구원) : 약간명
 - 6. 연구보조원 : 약간명
- 제7조(직무) 연구소의 임원 및 소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(2008.12.26)
 - 1. 소장은 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이 겸임하고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, 연구소의 제

반업무를 기획 관장한다.(2008.12.26)

- 2. 부소장은 약학대학 교학부장이 겸임하고 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소장 부재시 소장 업무를 대행한다.(2008.12.26)
- 3. 공동연구의 경우 소장은 책임연구원을 위촉한다.
- 4. 전임연구원은 대학교 약학전공 전임교수는 당연직 연구원이 되며 소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연구활동에 참여한다.
- 5. 연구교수 및 외래연구원: 대학교 약학전공 전임교원 이외의 외부 인사로 이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6. 연구보조원은 관련전공(학과)의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연구원 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.
- 7. 행정기획실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연구소의 일반업무를 담당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연임할 수 있다.
- 제 8조(운영위원회) 연구소의 운영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장 및 전임연구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연구소 내에 두며, 소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제 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1. 연구소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
 - 2. 연구 사업 계획 사항
 - 3. 연구소의 예산 심의 및 결산의 승인
 - 4. 연구소 규정의 개정
 - 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10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.
 - 1. 대학교 지원기금
 - 2.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및 찬조금
 - 3. 기타의 수입금

제11조(회계년도)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.

제12조(재산의 귀속)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